

第34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3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1994年7月11日(月) 午前11時

場 所：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
2. 城北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 1面
2. 城北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吳案泳議員外 11人 發議) 5面

(11時05分 開議)

○議事係長 鄭恩秀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運營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대한敬禮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國旗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旗에대한敬禮)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萬載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4回 臨時會 第3次 運營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

(11時07分)

○委員長 李萬載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을 계속하여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지난 6月30日 第1次 運營委員會에서 上程되어 심도있는 討論을 거쳐 금번 地方自治法 施行令中 改正令이 7月初에 公布 改正令에 맞추어 決算檢查委員을 選任코자 審査를 보류시켰던 件입니다.

지난 7月6日 地方自治法 施行令中 改正令이 公布되었습니다. 決算檢查委員 選任에 대한 改正事項을 살펴보면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6條에 市·郡 및 自治區의 경우 3人 이상 5人이하로 改正되고 또한 地方議會 議

員은 檢查委員數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規定이 同條 第2項 후단에 新設되었습니다.

따라서 檢查委員인 3人이상 5人이하로 定數를 정하고 議會 議員은 決算檢查 委員數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議員으로서는 한 분만이 決算檢查委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 案件에 대한 討論은 決算檢查委員 定數를 논하고 누구를 檢查委員으로 選任할 것인가, 그리고 選任 方法을 論議해야 하겠습니다. 討論하실 委員님,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九委員 議員은 1名만 選任을 해야 된다. 진짜 굉장히 힘들게 생겼네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決算檢查委員數는 몇 名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선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卜定安委員 우선 이 事項은 일반 專門會計士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할 때에는 많은 豫算을 支出해야 될 겁니다. 豫算에 대한 問題는 비단 우리 區議會 뿐만아니라 여러 각 地方議員들 전부가 그러한테 대한 問題點에 봉착할텐데 豫算에 대한 問題點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습니까?

○委員長 李萬載 豫算은 區廳에서 執行이 될 것으로 압니다.

○ト定安委員 그러면 區廳에서 執行을 하게끔 되어 있음으로 해서 區廳에서 그 問題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委員長 李萬載 네.

○ト定安委員 그런 것을 問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萬載 專門委員님, 그 問題에 대해서.

○專門委員 宋 鍊 法이 改正됐기 때문에 法대로 施行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法을 施行하려면 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豫算問題는 실령 확보가 안됐다 하더라도 豫備費가 있기 때문에 區廳에서 措置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萬載 豫算이 어느정도 檢査委員 한분에 얼마나 되는지 이런 部分에 대한 것은요.

○專門委員 宋 鍊 그것은 저도 公認會計士 費用이 얼마나 드는지는 확실히는 把握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萬載 네. 申夫浩委員님.

○申夫浩委員 아마 지금 專門委員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地方自治法이 改正됐기 때문에 이것이 地方自治法 第46條에 의해서 한 다라고 한다면은 決算檢査 委員은 5인이내니까 우리가 사실 前年度만 해도 우리 委員들이 세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議員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改正法이 됐으니까 우리가 議員이 決算檢査 委員으로 나가신다고 하면은 人員을 다섯분을 다 넣으면은 '豫算이 많이 나가니까' 세분만 해가지고 公認會計士를 초청하든 執行하는 것은 區廳에서 할 것이니까 우리가 두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議員 한분하고 세분이 하시는 것이 제 생각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萬載 지금 申夫浩委員님이 豫算關係도 고려하고 檢査하시는데 따른 委員數를 3인으로 하자는 意見을 냈고 崔哲模委員님이 동의하셨는데,

○權赫驥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萬載 네. 權赫驥委員님.

○權赫驥委員 저는 反對意見을 제시하겠습니다.

다.

決算檢査 委員은 城北區 1年 모든 財政 問題를 檢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수록 檢査하는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을 豫算關係 때문에 줄인다는 것은 檢査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法 限度 內에서 5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豫備費가 있기 때문에 豫算가지고 논의할 問題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발췌해가지고 是正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5명으로 하되 法으로 봤을적에 區議員은 1명인데 區議員 1명이라는 것도 本議員으로서는 運營委員會에서 어느분을 選出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고 人員은 5名, 또 區議員 1名 選出하는 方法으로 運營委員中에서 選出하는 方法이 두가지를 제의합니다.

○委員長 李萬載 네. 黃鎬山委員님.

○黃鎬山委員 이 地方自治法을 國會에서 改正할 때는 決算檢査 委員은 3名내지 5名했습니다. 3名에서 5名으로 한 이유는 뭐냐하면은 郡같은 곳에서는 豫算도 적고 人員도 적고해서 거기서 한 3名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하고 大都市일 경우는 豫算도 많고 議員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5名까지 豫算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융통성을 두자, 이렇게 만들자 해서 3名에서 5名으로 地方自治法이 改正되었습니다.

그런데 國務會議에 가서 그 方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대신 住民의 代表는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3名 뽑는데도 1名하고 5名 뽑는데도 1名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역은 지금 몇 명이냐하면은 7에서 10명이죠? 광역이.

專門委員님, 그렇습니까?

(「5에서 10名입니다」하는 이 있음)

5에서 10명이니까 거기는 廣域같은 데는 10名 뽑으면은 3名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議員들이. 또 적은 제주도 같은데는 豫算關係나 이런 關係때문에 1名 뽑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따라서 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가져봅니다.

그래서 물론 區廳이 豫算關係때문에 3名만 하자 이런 이유도 있지만 根本적으로

이것은 3명하는데는 아마 地方 郡議會 같은데가 3명 정도 생각하지만 이런 大都市에서는 決算檢査의 원래 목적대로 決算檢査를 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大都市에서는 5명정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유두리를 두어서 3명을 할 것인가, 5명을 할 것인가, 여기서 꼭 해야 된다면 5명 하지만 유두리를 둔다면은 우리가 決算檢査 委員 選任이라는 유두리를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委員長 李萬載 지금 權赫驥委員님이 말씀하신 法의 테두리 안에 5명을 選任해서 또 세세한 決算檢査를 하자는 말씀이셨고 黃鎬山委員님이 동의하시는 發言이죠. 또 다른 委員님.

○金吉泰委員 專門委員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公認會計士에서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자, 또는 會計管理業務를 5년이상 擔當한 경력있는 자, 이렇게 얘기 했는데 우리 地方自治法대로 議員중에서 1명이라고 했는데 1명외에 5명을 한다면 4명을 말하자면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問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지요?

○專門委員 宋 鍊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問題를 討論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公認會計士職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또 서울特別市 自治區 豫算 會計關係公務員 5년이상 擔當한 이런 사람이 우리 城北區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選拔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일단 城北區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 이런 資格을 가진 사람을 발췌를 해 가지고 選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金吉泰委員 그러니까 우리 議會에서 차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區廳에서 차출하는 것이지요?

○專門委員 宋 鍊 議會에서 해야죠. 議會에서 選任을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은 名單을 回附해가지고 選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權赫驥委員 委員長님.

○金吉泰委員 우리 權赫驥委員님과 黃鎬山委員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萬載 金吉泰委員님이 5인으로 하자는데 再請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趙基燦委員 저도 三請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萬載 네. 趙基燦委員님의 三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안을 申夫浩委員님이 意見을 내시고 崔哲模委員님이 동의하신 3명으로 하자는 案과 또 우리 權赫驥委員님이 5명으로 하자는 案, 두 案이 나왔습니다. 두 案이 上程되었는데 천상 3명으로 하자는 안과 5명으로 하자는데 따른 表決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舉手로 表決하는데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黃鎬山委員 全般的으로 5명 하자는데 申夫浩委員님이 發言하셔서 하죠.

○申夫浩委員 제가 補充發言하겠습니다. 사실 公認會計士를 우리가 초빙을 하면은 豫算이 豫備費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 豫算이 꽤 많이 나갑니다. 公認會計士를 쓰면 全體 豫算에 보통 돈이 나가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4명을 초빙했는데 4명만해도 豫算이 상당히 많이 所要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명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議員 한분하고 두분만 해도 公認會計士 쓰면은 이거 며칠이면 다 끝내요. 2명만 하자면은 전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우리 議員들이 3年間 걸쳐 하셨는데 사실 議員들이 열흘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보면서 완전히 책임있게 해주고 있어요. 사람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豫算을 한번 딱 퍼면은 이분들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施設事業費 1億짜리다 딱 퍼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나와요. 公認會計士 2명하고 우리 議員 1명해서 세분이 하면 충분히 이거 900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公認會計士 책임맡고 정말 일 잘하죠. 사람 많다고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李萬載 申夫浩委員님이 補充發言을 하셨는데 우선 討論을 마치고 表決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黃鎬山委員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송파구나 용산구 같은데는 議員 1名하고 公認會計士가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議員만 했을 때가 經費가 한 300萬 원 듭니다. 세명이 한달 했을 때에.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地方自治法 예를 들어서 확일적으로 가지말자 해서 3名내지 5名이니까 제가 볼 때는 大都市일 경우는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열흘이면 열흘, 1주일이면 1주일, 이런 것은 유두리를 뒤서한 900億 豫算같은데는 그분들이 얘기하면 열흘할 것,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地方自治法 테두리 안에 5名까지 할 수 있는 方法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委員長 李萬載 제가 여러 委員님들한테 決算檢査期間 및 檢査意見書 提出에 따른 條項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檢査委員은 區廳長으로부터 決算書 및 證憑資料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檢査를 終了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6日내에 終了할 수 없을 경우에는, 檢査委員은 區廳長으로부터 決算書 및 證憑資料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檢査를 終了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일내에 終了할 수 없을 경우에는 議長의 承認을 받아 5日의 범위 내에서 檢査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日이내에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대로 이렇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日이내에 끝나지 않으면 議長의 承認을 받아 5日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條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豫算에도 關係가 되지만 또 投入되는 人員에 따라서 決算時期도 또 앞당길 수 있는 關係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參考로 하셔서 더이상 討論없이 表決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表決하도록 하겠습니다.

申央浩委員님이 3名으로 하자는 안을 1名으로 하고 權赫驥委員님이 안을 내신 5名

으로 하자는 안을 2名으로 해서 表決에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2안의 5名으로 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舉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舉手表決)

손 내려주십시오.

1안인 3名으로 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舉手表決)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이 1안에 동의를 해도 7名밖에 안 되고 2안에다가 동의를 하게되면 8名으로 되기 때문에 委員님들의 多數의 意見을 존중해서 제2안인 5名으로 하자는 안에 동의를 해서 2안으로 議決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城北區議會 決算檢査 委員 選任의件은 檢査委員 數를 5名으로 그리고 決算檢査 委員 5名중 1名을 우리 區議員으로하여 本會議에서 選任 議決하고 나머지 4名은 公認會計士 몇 인, 豫算 또는 會計管理業務 5年以上 경험한 5級이상에 있었던 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公認會計士를 4名중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또 豫算 또는 會計管理業務 5年以上 경험한 5級이상에 있었던 자를 몇인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문제를 4名으로 하되 議長團 및 委員長에게 委任 하신다든가 이런 안을 우리 委員會에서 意見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4名중 公認會計士와 또 5年以上 경험한 5급이상에 있었던 자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權赫驥委員 그 問題를 다루기 전에 한 10분만 停會를 要請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萬載 지금 權赫驥委員님이 10분간 停會를 要請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26分 停會)

(12時09分 續開)

○委員長 李萬載 會議을 續開하겠습니다.

더이상 討論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討論이 없으시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城北區議會 決算檢査委員會 選任의 件은 檢査委員數를 5人으로 그리고 決算檢査委員 5人중 1人은 우리 區議員으로 하여 本會議에서 選任議決하고 나머지 4인의 選任方法은 議長團 및 委員長 本會議에서 選任된 決算檢査委員에게 委任하고자 하는데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城北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吳榮泳議員外 11人 發議)

(12時10分)

○委員長 李萬載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城北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지난 7月5日 吳榮泳議員外 11 人의 議員으로부터 發議된 案件으로써 7月5日 議長으로부터 運營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먼저 本 案件을 發議한 吳榮泳副議長님의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吳榮泳副議長님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吳榮泳 이 삼복더위를 방불케하는 무더위 속에 연일 우리 城北區民의 權益保護와 福利增進 그리고 城北區政의 건전한 發展을 위하여 議政活動을 해주신 우리 議員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本議員이 이번에 提案한 것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城北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 要求의 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本案件은 區政에 관한 質問과 執行機關으로부터 答辯을 들음으로써 區政執行의 實態를 파악하고 地域住民이 區政에 바라는 事項을 區行政에 반영시키고자 地方自治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城北區廳長 및 關係公務員을 本會議에 出席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94年度 첫번째인 이번 區政質問이 區政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同僚議員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萬載 네. 吳榮泳副議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討論時間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申夫浩委員님.

○申夫浩委員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을 出席을 해서 區政質問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상 豫算審議하기 전에 追更豫算이라든지 또는 定期會 本豫算 審議라든지 그전에 區政質問을 해서 豫算審議를 하는 것으로 통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國會나 또는 市議會도 역시 같은데 이것은 本會議中이던 이번 臨時會中을 말씀하시는지 答辯을 해주세요.

○副議長 吳榮泳 그 提案에 대해서는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합니다.

○申夫浩委員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하는 것입니까?

○金炯九委員 아니 35회니까 다음 會期中이지...

○申夫浩委員 다음 臨時會議.

○副議長 吳榮泳 運營委員會에서 이 區政質問을 받아 주신다고 決定이 나고 本會議에 報告를 해서 本會議에서 決定이 나면 그 時期는 언제로 할 것이냐가 다시 運營委員會에 附議됩니다.

○申夫浩委員 다음 臨時會 本會議에서 區政質問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定期會는 12月달인데 區政質問을 다음 臨時會에 할만한 그런 뭐가 있습니까?

○副議長 吳榮泳 8月달에도 臨時會를 해야 되고 우리가 45日의 臨時會 期間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區政質問에 가까운 質問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上半期 6個月이 經過되도록, 아까 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追更豫算때에 그 追更豫算과 관련된 事項은 그 부분 豫算에만 質問이 되었고 答辯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質疑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區民들의 弘報 또는 區政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上半期 事項은

區政質問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意見에서 發議한 것입니다.

○金吉泰委員 그러니까 昨年까지만 하계되면 臨時會 30日, 定期會 30日 해가지고 定期會 때 區政質問을 議案으로 上程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改正된 地方自治法에 의해서 議員님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區政質問을 發議할 수 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效果를 거두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議員님이 發議申請을 한 것 같아요.

○副議長 吳案泳 法이 바뀌어서

○黃鎬山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區民의 代表라는 것은 언제든지 質問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國會도 定期會 때만 國政質問하는 것이 아닙니다. 臨時會 때 항상합니다. 지금 廣域地方自治 會議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區에서는 臨時會 때 그동안 알고 싶었던 것 묻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우리 城北區에서 區政質問을 定期會가 아닌 상태에서 한번 하자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積極的으로 贊成을 합니다.

○朴德基委員 우리 吳案泳議員님 發議한 데 대해서 贊成을 하면서 정말 만사지탄격입니다. 더군다나 區廳 關係公務員이 大移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豫算도 있고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8月중으로 해서, 8月初로 해서 區政質問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萬載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黃鎬山委員 제가 볼 때는 앞으로 臨時會를 열면 하루나 이틀은 시작할 때 區政質問을 할 수 있도록 이런 制度的으로 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委員長 李萬載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討論하도록 하겠습니다. 討論에 임하실 委員님?

예. 權赫驥委員님.

○權赫驥委員 지금 運營委員會 여기 계신분들은 전부가 臨時會議를 質問을 3日間으로 하시는 것으로 동감을 하시는 것 같은

데요. 吳案泳議員님한테 좀 여쭙보겠습니다. 3日間이라고 하면 3日間 常任委員會別로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本會議에서만 3日間 할거나 그렇지 않으면 常任委員會別로 時間을 정하고 그다음에 本會議에 質疑가 들어가고 이렇게 각 常任委員會別로 하고 本會議에 質疑하는 것이냐 그 計劃이 어때신지?

○吳案泳議員 城北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한 1項에 出席日字 本會議 기간중 3日間인데요. 本會議 기간중에 本會議에 나와서 答辯하는 것을 의미하는거고, 常任委員會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常任委員會에서 의뢰해가지 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할 것이 아니라.

○黃鎬山委員 저도 얘기를 드릴까요? 서울시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으면,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시 議會를 제가 살짝 본 것을 얘기하면 臨時會를 열자마자 本會議에서 市政質問을 하고 市政答辯을 듣고 그다음 常任委員會別로 業務實態報告를 하고 그다음 追更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3日間도 本會議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本會議에서 어떤 事項이든지간에 區政質問하고 答辯듣고 그 뒤는 각 常任委員會別로 業務報告를 받든지 質疑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萬載 다른 委員님, 討論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贊成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지금 대체적으로 贊成하는 意見이 많으신데, 더이상 討論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討論이 없으시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城北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은 原案대로 審査하여 本會議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論議가 끝났으므로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第34回 臨時會 第3次 運營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20分 散會)

○出席委員 14人

權 赫 駒	金 光 鎬	金 甲 濟
金 吉 泰	金 炯 九	朴 德 基
卜 定 安	蘇 正 煥	申 夫 浩
李 萬 載	趙 基 燦	崔 哲 模
黃 義 揮	黃 鎬 山	

○缺席委員 1人

金 正 圭